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437호

나. 발 의 자 : 이성배 의원(찬성자 39명)

다. 발의일자 : 2025년 2월 3일

라. 회부일자 : 2025년 2월 5일

2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화 조항을 신설(안 제7조 제5항)
- 나. 위원회 임기규정을 삭제하여 비상설위원회로 운영(중전의 제8조 삭제)
- 다. 위원회의 회의 소집방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[안 제9조(중전의 제10조) 제1항~3항]

라. 종전의 제8조 삭제에 따른 조문 이동(제9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함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강옥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상설 운영이 명시된 공정관광위원회를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의 시행에 따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음.

나. 공정관광위원회의 비상설화 필요성

-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서울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¹⁾를 위한 공정관광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.
- 최근 5년간 공정관광위원회의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, 2020년 조례 제정 이후 2022년 공정관광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것 외에 이루어진 위원회 회의가 전무한 실정임.

< 공정관광위원회 운영 현황 >

- 위원구성 : 총 10명(당연직1, 시의원1, 학계3, 연구원2, 법률1, 도시계획1, 유관단체1)
- 임 기 : '22. 9. 1.~'24. 8. 31.(2년)
- 개최 현황 : 총 1회
 - 서울시 공정관광위원회 제1차 정례회('22. 12. 19.)

1) 제6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정관광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고, 그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.

1.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
2.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
3.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- 또한 조직담당관의 〈2024년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계획〉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음.
- 현재 정부는 ‘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’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지자체 위원회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바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불요불급한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개편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,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.

다. 개정안의 주요 내용

(1)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(안 제7조 및 제8조)

- 동 개정안은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위원회 임기조항을 삭제하고, 안전 발생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및 개최하도록 하고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</u>
제8조(위원회의 임기) ① <u>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u> ② <u>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u>	<u><삭제></u>

- 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만, 행정 여건의 변화 및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음.
-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동 개정안의 취지 또한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.

<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6조제3항 >

제6조(위원회의 설치요건)

-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(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해당 안건이 심의·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)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
 2.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
 3.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
- 또한 행정안전부는 비효율적으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」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음.
- 상기 지침의 위원회 비상설 전환을 위한 표준안 내용이 동 개정안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특별한 법제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< 행정안전부 위원회 비상설화 표준안 >

현 행	개정안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	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해산한다.

(2)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(안 제10조)

- 개정안은 새로운 안건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, 위원회 소집의 주체를 이미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아닌 시장으로 정하고, 필요에 따라 개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.

< 관련 신.구조문 대비표 >

현행	개정안
제10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.	제9조(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. 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	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③ ----- 구성위원 ----- ----- -----.
④ ~ ⑧ (생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- 이는 위원회가 비상설화 됨에 따라 안건 논의 이후 자동 해산하므로, 위원회의 위원장 역시 해산과 함께 그 직을 면하게 되어 새로이 회의를 개최할 경우 소집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.
- 시장은 행정의 전문성·민주성·투명성·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바, 공정관광 활성화에 대한 자문·의결 사항이 발생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할 때 행정기구를 설치할 권한이 있는 시장이 이를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의안번호
2437

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	소관 상임위	
	이성배의원	2025. 2. 3.		문화체육관광위원회	
주요내용	〈제안이유〉 ○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으로 위원회 설치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				
	〈주요 입법 요지〉 ○ 비상설화 조항 신설(안 제7조의 제5항) ○ 위원회 임기규정 삭제(종전의 제8조 삭제) ○ 위원회 회의 소집방법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변경(안 제9조(종전의 10조) 제1~3항)				
추진경과	○ 2025. 2. 3. 조례안 발의(발의자 : 이성배 의원) - (찬성자) 강석주, 고광민, 곽향기, 김규남, 김동욱 의원 등 39명				
부 서 검 토 의 건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동 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시 비상설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('23. 7. 24.)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○ 공정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				
대응방안	○ 해당없음				
상 임 위 처 리 결 과	○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				
향 후 계 획	○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				
담당부서	관광정책과	팀장	김미경(☎2133-2818)	담당	임지연(☎2133-2824)